

무서번호: 제2018.019호 2018.06.07.

수 신 : 대한체육회 체육인복지부 주 소 :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발 신 : 분당 더샵 파크리버 분양사무소

제 목 : 분당 더샵 파크리버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요청의 건

참 조 : 담당자 (최명운 이사)

1.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당사에서 공급하는 "분당 더샵 파크리버" 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36조에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공급 위치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일원

2. 공급 규모 : 아파트 지하 4층~ 지상 34층 총 5개동 총 506세대

#### 3. 일정 안내

① 견본주택 오픈일(예정): 2018. 06. 22. (금) 예정

② 청약접수 신청일(예정): 2018. 06. 26. (화) 예정

③ 청약 장소 :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(www.apt2you.com) 온라인 청약 접수 (08:00분~17:30분)

④ 당첨자 발표일(예정): 2018. 07. 06. (금)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예정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분양승인 일정 및 접수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※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견본주택에서 청약접수를 하지 않으며,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4.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- 우수선수

주택형(㎡)	59A	59B	74A	74B	84A	84B	84C	84D	84E	84F	합계
배정 세대	_	_	_	-	-	1	-	_	-	_	1
예비 추천	_	_	_	_	_	1	_	_	_	_	1

\*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, 거주요건 우선순위가 계약 또는 서류접수 시 증빙서류와 상이 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 됩니다. \*배정세대에 대한 추천 및 예비 추천 세대수에 맞게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5. 사업주체 및 담당자

① 시행사 : ㈜하나자산신탁 ② 시공사 : ㈜포스코건설

③ 담당자 : 최명운 이사(070-8015-4060/sasaju@hanmail.net),(FAX) 031-8016-8142

※ 분양문의 : 031-539-0600 , <a href="http://www.bundang-thesharp.co.kr">http://www.bundang-thesharp.co.kr</a>

## 6. 대상자 회신

① 특별공급 대상자 회신일 : <u>2018. 06. 20. (수) 12시 까지</u>

② 대상자 통보 :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붙임2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양식을 사용

하여 회신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미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

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③ 공문 회신 주소 : (우)463400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50번지 분당 더샵 파크리버 견본주택 (T:031-539-0600)

또는 담당자 이메일(sasaju@hanmail.net), FAX(031-8016-8142) 회신

※ 붙 임 : 1. 분당 더샵 파크리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.

2.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양식. 끝.

### 분당 더샵 파크리버 분양사무소장 (직인생략)

# [붙임1]

# 분당 더샵 파크리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-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. 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)
-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·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,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.
-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'신 청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안내,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. 공급개요 및 일정

■ 위치 :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일원

■ 공급규모 : 분양주택 총 506 세대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 수 :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38세대 중 우수선수 특별공급 1세대

주택형(㎡)	59A	59B	74A	74B	84A	84B	84C	84D	84E	84F	합계
배정 세대	-	_	_	_	_	1	_	-	_	_	1
예비 추천	_	_	_	_	_	1	_	_	_	_	1

※ 당첨자 선정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, 사전서류 접수일 또는 계약시 증빙서류와 상이 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.

#### ■ 일정 계획

구분	일자	참고사항			
견본주택 개관 예정일	2018. 06. 22(예정)	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50번지			
특별공급 신청 예정일	2018. 06. 26(예정)	인터넷 접수(견본주택 방문접수 불가)			

※ 위 일정 및 계획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2. 특별공급

■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2호, 제3호 (국가보훈대상자), 제4호(5.18민주유공자),제5호부터 제7호까지(의사상자, 참전유공자 등), 제 35조1항 제6호, 제7호, 제9호, 제10호, 제15호, 제17호, 제19호, 제20호,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, 제26호(장애인, 우수기능인, 중소기업근로자 등), 국외근로자(제36조 제9호) 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

#### ■ 특별공급 입주자저축(청약자격요건)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[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(제35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분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)를 제외한다], 주택을 특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-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통장 잔액이 지역별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,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(www.apt2you.com)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신 분
- ②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신 분
- ③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㎡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신 분
- ※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.

### <청약예금의 예치금액>

구분	경기도	서울특별시	인천광역시
전용면적 85㎡이하	200 만원	300 만원	250 만원
전용면적 102㎡이하	300 만원	600 만원	400 만원
전용면적 135㎡이하	400 만원	1,000 만원	700 만원
모든 면적	500 만원	1,500 만원	1,000 만원

- ※ 상위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일 경우 하위 면적 포함하여 선택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.
- ※ 일반 (기관추천)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㎡이하 타입만 신청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'무주택세대구성원'의 정의

- 가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
- 나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다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라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- ① 과거 재당첨제한 주택(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,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) 또는 "청약 조정 대상지역"에서 당첨된자 및 세대에 속한 자(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)는 재당첨 제한기간 미경과시 특별공급 청약 불가
-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'무주택세대구성원'이 아닌 자.
- 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 55조에 의하여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(기관추천, 신혼부부, 다자녀, 노부모특별공급 등) 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 (철거민, 이전기관종사자 제외)

#### ■ 행정사항

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 가능하며, 확인결과 위의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,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. (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)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본인이 책임지므로, 해당기관에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시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, 호수배정) 및 계약불가]

#### 3. 유의사항

-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40%로 제한(주택담보대출 보유, 실수요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저 30%~최고 50% 적용)되며, 기분양 주택의 중도금 대출 보유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, 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 지정기관(금융결제원)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 됩니다. (미신청, 미계약 동, 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)
- 공급금액, 전매제한기간, 재당첨기간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 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, 팜플렛 및 문의전화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정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 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상기 내용은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오류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


# [붙임2]

#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양식 - 예시

주택	NO	유형		주민등록번호	연락처	거주요건(해	당사항 체크)	주소
주택 형 (㎡)			성명			성남시 1년 이상	기타	
	1	우수선수						
59A	2							
	예비							
	1							
59B	2							
	예비							
74A	1							
74B	1							
84A	1							
84B	1							
84C	1							
84D	1							
84E	1							
84F	1							

※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